

2020년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3.(수), 10:30 ~ 13: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김경숙 위원, 김연희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윤종수 위원, 위정현 위원, 이성엽 위원,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0-2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제2호: 분과위원회 구성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전번호 제2020-37121호, 37122호(순번 1번, 2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4. 9. 개최, 제2020-51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직접 받아쓰기 한 중국 드라마의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전송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23호~37127호(순번 3번~7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4. 27. 개최, 제2020-66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의 △△△△△△△△△△△△△△△△ △△△△△△△△△△가 본인이 제작한 영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28호~37146호(순번 8번~26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4. 13. 개최, 제2020-55회 회의) 및 제2분과위원회(2020. 4. 22. 개최, 제2020-61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47호~37149호(순번 27번~29번)는 제2분과위원회(2020. 4. 29., 5. 6. 개최, 제2020-67회, 69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뮤지컬 ‘밀녹’ 자료 교환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50호(순번 30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5. 21. 개최, 제2020-82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오디오

동호회 카페 회원이 자신의 오디오 스피커로 재생되는 대중가요 1곡의 음원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51호~37187호(순번 31번~67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5. 18. 개최, 제2020-80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소규모 밴드(회원 수 100명 이하)에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안
- 안전번호 제2020-37188호(순번 68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4. 20. 개최, 제2020-60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가 제공하는 ‘○○○○○○○○’ 커뮤니티 서비스의 특정 카페 게시물(게시글, 댓글) 일체를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가 무단 복제하여 직접 전송한 사안

- 회의결과

- 중국 드라마의 대본을 직접 타이핑하여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해당 드라마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함
- 민원인이 ‘■■■■■■■■’ 약관에 동의하고 방송한 콘텐츠의 일부가 문제가 된 점,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영화, 음원 등 상업적 저작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있는 점, 민원인의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비교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이 비밀댓글로 작성되어 실제로 “교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게시물 내용을 보면 판매는 댓글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밀댓글은 판매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디오 동호회에서 영리나 불법복제물 공유 목적이 아닌 스피커 음질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원을 제공한 것으로 커뮤니티의 건전한 저작권 환경 조성 및 저작권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개방형 밴드에서 최신 개봉한 영화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 민원인 회사가 심의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 판결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카페 게시판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민원인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對審制)가

아닌 관계로 심의대상 웹사이트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민원인 회사가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제2호: 분과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에 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재구성

- 회의결과

-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결정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차회의록 16쪽, 18쪽, 36쪽 자구 수정의견을 주셨음.
저작권법 103조의 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의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제1항 제1호에 따라 의결을 거쳐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음.
- A 위원 : 전차회의록에 비식별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과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참석 위원 전원 : 이의 없음.
- 박성호 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

하며,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과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121호, 3712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 이용자가 직접 받아쓰기 한 중국 드라마의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전송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37121호 심의대상 사이트를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중국 드라마 ‘◆◆◆◆ ◆◆◆◆◆◆’의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드라마 포스터, 드라마 주제곡 뮤직비디오 영상이 유튜브 스트리밍 형태로 함께 게시되어 있음. 게시자는 게시물 제목 ‘□□□□□ □□□□ □□□□□□ □□ □□ □□□□□’로 제공하고 있고, 게시물 내용에는 “△△△ △△△△ △△ △△△△ △△ △△ △△△△ △△△ △△△ △△△ △△△ △△△ △△△ △△△ △△△ △△△ △△△ △△△△△△△”라고 기재함. 중국어 대본을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안건번호 제2020-37122호 심의대상 사이트를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중국 드라마 ‘▼▼▼▼ ▼▼▼▼▼▼’의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스틸컷, 드라마 메이킹 영상 5개가 유튜브 스트리밍 형태로 함께 게시되고 있음. 게시자가 “□□□ □□□ □

□ □□□□ □□□□□ □□ □□□ □□□□ □ □ □□□□ □
□ □□□□ □□□□□ □□□□□”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중국어 대본을 게시자가 직접 받아쓰기한 것으로 추정됨.

- B 위원: (이석)

- 박성호 위원장: 본 안건은 2020년 4월 9일 개최한 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주었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문위원에게 질문이 있음. 기존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이 문제된 안건들 중 외국어 대사를 받아쓰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없었음.

- 박성호 위원장: 지금까지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 안건은 외국 영상저작물의 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파일을 제작한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었음. 해당 안건은 영상저작물의 외국어 대사를 받아쓰기하여 PDF로 게시한 건으로 보임.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회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C 위원: 본 안건은 블로그 이용자가 중국어 드라마의 중국어 대사를 직접 받아쓰기하여 공중에 제공한 사안임. 기존의 자막파일과 동일한 사안으로 봐야하는가가 쟁점이었음. 우리말 자막파일 경우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고 영상과 결합한 후 합법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그러나 블로그 이용자가 우선 중국어 대사를 받아쓰기하고 우리말로 번역 후 자막파일을 제작하기 위함인지, 중국어

학습을 위해 받아쓰기 한 것인지 불분명함. 이용자 입장에서는 중국어 대사만 보고, 이것을 해석하여 중국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임. 중국어 대사 PDF 파일을 전송한 본 건의 경우 기존 심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므로 다른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박성호 위원장: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2020-51회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을 보면, D 위원님께서 “영상저작물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한 합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음. 이러한 사안까지 고려하여 안전번호 제2020-37121호, 3712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E 위원: 중국드라마의 대본을 그대로 딕테이션(dictation) 하였기 때문에 각본저작물에 해당됨. 해당 안전과 유사한 기존 안전 중 방송작가 지망생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대본을 불법 제공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가결로 의결한 바 있음. 이와 같이 동일·유사한 형태의 안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일맥상통해야 함. 해당 안전의 경우 소량의 중국어 대본 PDF를 게시하여 부결함에 크게 이견은 없으나, 기존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 ‘작가 지망생 대본 유출’ 안전 같이 외국 드라마의 외국어 대본이 다량으로 공유될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해 어떠한 심의 기준으로 심의할지 확립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작가 지망생 대본 유출’ 안전과 비교하면 중국 드라마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가 운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임. 2개의 안전을 같이 비중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임.

- F 위원: 우리나라 드라마 대본들은 출판으로도 이어지는 등 시나리오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극작가나 방송작가들이 본인의 대본이 이용 허락 없이 활용되거나 우리말 대본이 영어로 번역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싶어 함. 우리나라 내에 중국 드라마 시나리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잠재적 가치나 구매력이 낮지 않을까 생각됨. 부결 의견에 큰 이견은 없으나 시나리오 전체를 다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음.
- A 위원: 본 안건만 놓고 본다면, 중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국 드라마를 보고 중국어 학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의견 표명을 하고, 본인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어 대사를 받아쓰기하여 PDF로 게시한 사안으로 생각됨.
- C 위원: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디테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디테이션의 수준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G 위원: 아마추어 동호회 수준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G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건전한 팬(fan) 문화와 공유문화까지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견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앞서 E 위원님께서 외국어 대본과 관련된 심의 기준 확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셨음. 그러나 해당 안건만 놓고 외국어

■■■■■■■■ ■■■■ ■■■■■■ ■■■■■■고 기재되어 있음.

- 박성호 위원장: 본 안건은 2020년 4월 27일 개최한 1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주었는데,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께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H 위원: 본 안건의 민원인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의 △△로 활동한 바 있으며, 본인이 제작 또는 출연한 영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음. 저작권성은 인정되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상업적 성격의 '1인 방송' 특성상 해당 영상을 사후적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가결 의견임. 검토보고서상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 의견을 주었음. 시정권고 제도는 불법복제 전송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이 금번 심의의 논의 대상으로써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구함.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2020-66회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을 보면, D 위원님께서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약관 제24조에 회사, 타 회원 기타 이용자 및 회사의 제휴사가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였음. 1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심의할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부결 의견을 주신 것 같음. 1인 미디어와 관련된 시정권고 대상 안건에 대해서 전체위원회

차원에서 일정한 심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생각됨.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F 위원: 명예훼손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만일 해당 안건이 시정 권고 될 경우 일반인이 영상이 마음에 안들 때마다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에 저작권 침해로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 C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임. 해당 안건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해당 안건의 경우 권리자가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임. 권리자의 본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움짤'로 제작하여 전송되었다는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됨.
- G 위원: 저작인격권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임. 재산권의 경우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약관 규정 때문에, 또는 약관 규정이 없더라도 일종의 공중 이용 또는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이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임. 제가 해당 안건의 원저작물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해당 '움짤'이 원저작물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이거나 권리자가 영상 제작할 때 중점을 두고 제작하는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음. 제3자가 권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움짤'로 제작했다고 판단되지 않음. 오히려 그

러한 부분을 영상의 주요 콘셉트로 제작하였다고 생각되어짐. 저작
인격권 침해 행위로 다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I 위원: 현재 '■■■■■■■■'에서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더 이상 제공되고 있지 않음.
- I 위원: 짐작컨대, 권리자 본인이 철회한 영상으로 보이며, 더 이상 유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그 영상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임. 권리자가 해당 게시물
의 전송중단 또는 삭제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권리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권리자가 더 이상 영상이 유통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권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됨.
- J 위원: 권리자가 '■■■■■■■■'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이 주요 사항이라고 생각됨. 권리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로 활동하였고, 상당한 인기를 누린 것으로 보임. 그러한 인기를 누린 후 권리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용약관에 동의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음. 권리자가 약관에 동의한 행위 자체가 제3자가 영상을 활용해도 좋다는 의도임. 이제 와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권리자의 요구는 콘텐츠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임. 그러한 점에는 저는 부결 의견임.

- H 위원: 전체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안건 중에 해당 권리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보조 출연한 영상이 있음. 해당 안건들은 민원인에게 권리가 없으므로 부결 처리했음. 해당 영상은 현재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임. 권리자가 민원 제기한 안건이 문제가 된다면,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나 방송물을 활용하여 ‘움짤’을 제작하여 블로그 게시물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함.
- I 위원: 통상 방송물은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 지속적이고 적법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 비하여, 해당 안건은 △△ 본인이 권리자이고, 본인이 해당 영상 유통을 철회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방송사와는 구별하여 처리해야함.
- K 위원: 권리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더라도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물론 명예훼손 등 다른 방법으로 제재 할 수 있겠지만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면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 A 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 ‘■■■■■■■■’ 이용약관 24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이용약관을 따르면 “회원이 서비스에 제공한 콘텐츠를 회사나 타 회원 기타 이용자가 녹화/편집/변경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한 다음 이를 서비스의 타 회원 기타 이용자들이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회사의 제휴사에 제공하여 그 이용자들이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용약관과 관련된 부분도 유의해 가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기

타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옴짤’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면 일반 권리자까지도 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심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옴짤’과 같은 것들을 다 규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게 된다면 시정권고 제도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여지가 있음.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여 우리 심의위원회의 논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

- K 위원: 민원인에게 시정권고 심의결과를 알려줄 때 민원과 관련된 다른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중심으로 답변하되 관련 법조항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K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민원이 저작권법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심의결과 안내할 때 해당 민원과 관련된 법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음.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권고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음. 시정권고 조치의 직접 상대방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임.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써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답변에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부정경쟁방지법 등 민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포함되고 있음. 또한 민원과 관련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시정권고 심의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인지?
- A 위원: 시정권고의 심의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기보다도 해당 안건이 시정권고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쇄도할 것으로 생각됨. 해당 안건은 명예훼손, 잊혀질 권리 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임. 조금 더 포괄적인 권리문제가 얹혀있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러한 사안까지 핵심적인 심의대상으로 삼아 시정권고 대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는 입장임.
- G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임.
- 박성호 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함. 해당 안건은 자유롭게 표결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 안건번호 제2020-37123호~3712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가결: C 위원, I 위원, K 위원 / 부결: L 위원, A 위원, H 위원, F 위원, J 위원, G 위원, E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0-37128호~37146호(순번 8번~26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4. 13. 개최, 제2020-55회 회의) 및 제2분과위원회(2020. 4. 22. 개최, 제2020-61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안임.

- 박성호 위원장: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안은 1기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사안으로 핵심 쟁점을 잘 알고 있는 E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람.

- E 위원: 시정권고 제도 자체가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두 가지 행위주체를 설정하고 있는데 시정권고 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음. 어떤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 행위를 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었음.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기획자는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법원의 판결이나 보호원의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회피설계를 하는 형태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했음.

대표적으로 링크를 설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하지 않았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을 올려놓고 링크로 연결해서 법을 회피하는 설계가 많았음.

불법복제물이 사이트에 횡행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링크방식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 시작하였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여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이 염두해두지 않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리는 경우와 복제·전송자가 올리는 것과 표면적으로 보면 동일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걸리는 부분은 법의 해석상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임. 1기 심의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었음.

- A 위원: 1기 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전송을 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했고 표결 결과 다수 위원이 부결 의견이었고 일부 위원이 가결의 소수의견을 냈음.

- E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불법복제 전송자가 겸유할 수 있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의 지위도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지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으로도 시정권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임.
법을 회피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임. 이에 심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E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정이 처음 저작권법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법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음.
유럽의 상거래 지침에서 리사이트 조항을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해서 콘텐츠 제공자든 매개자든 모두 포섭하고 책임이 제한되는 제공자만 책임제한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콘텐츠 제공자는 제외하고 매개자만 정의 규정에 두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움.
법 제102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이지만 제133조의2, 3은 그렇지 않음.
정의 규정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내용을 개정한다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복제·전송자에

해당되므로 시정권고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만 본다면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됨.

- G 위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제도가 일반적인 제도가 아닌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작권법 침해는 권리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절차를 따라 가는 것임.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경우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침해 확장이나 그렇게 제하면 위협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여서 확장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그게 문제가 되면 전통적인 권리침해 방법인 형사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함.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 H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을 다량 전송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려서 접속이 차단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음. 만약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시정권고를 할 것이냐가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음.
- C 위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콘텐츠 제공자든 매개자든 포섭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은 콘텐츠 제공자를 제외하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 법과 비교해도 부족함.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C 위원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 C 위원님 말씀은 우리 저작권법이 입법론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입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한다는 견해인지 해석론적으로도 불법 복제·전송자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도록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인지?
- C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되도록 해석을 해야된다는 것은 제 입장은 아님. E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해석하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입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법 해석이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해석론적으로는 G 위원님과 같은 견해인지?
- C 위원: 그러함.
- I 위원: 우리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복제·전송자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임. 복제·전송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됨. 논의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을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저는 부결 의견임.
- K 위원: 민원인한테 내용을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무리한 해석론이지만 종전에 어떤 해석론을 취했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불법복제 전송자를 명확하게 구별해야하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 전송자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당연히 면책조항이 적용 안 됨. 법 제133조의3은 면책조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제

적으로 불법복제 전송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취지임. 개념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불법복제 전송자가 분리되어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 전송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1기 심의위원회 때 E 위원님과 소수의견을 취해왔음.

- 성원영 전문위원: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시정권고의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J 위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저는 행정처분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유력한 견해는 행정지도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개인적으로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마찬가지로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하지만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음.
- C 위원: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 J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추후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 2020-37128호~3714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37128호~371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가결: L 위원, A 위원, H 위원, F 위원, K 위원, J 위원, E 위원 / 부결: C 위원, I 위원, G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제2분과위원회(2020. 4. 29., 5. 6. 개최, 제2020-67회, 69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전으로, 뮤지컬 '밀녹' 자료 교환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임.
- 박성호 위원장: 제2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전으로 E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E 위원: 밴드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했을 때는 영상을 밴드에 직접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시정권고를 받게 되니까 업로드 방식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형태로 변경되었음.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도 시정권고 하나까 메일 주소를 기재해주면 메일로 보내드리겠다는 방식으로 변경됨.
 심의대상 게시물에 불법복제물을 주고받은 정황증거가 있어서 시정권고하였는데 시정권고해서 게시물이 삭제되니까 실제로 불법복제물을 요청하는 이용자에게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비밀댓글로 진화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비밀댓글의 정황만 가지고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소명되었다고 봐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함. 점점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형태로 회피 설계되고 있는 것임. 지금 심의대상 게시물에 불법복제물을 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받았다는 정도의 내용이 확인되는지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심의대상 게시물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며)모두 비밀댓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메일 주소나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함.

- A 위원: 비밀댓글만 있음.

- E 위원: 게시물 댓글에 “비밀 댓글입니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댓글 내용에 “날씨 좋네요”, “받았는데 재생이 안되네요”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음.

만약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비밀댓글로 불법복제물을 주고받는 불법전송방식이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불법복제물 전송방식이 비밀댓글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변경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뮤지컬 콘텐츠인데 뮤지컬을 보기 좋게 녹화해서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뮤지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영화는 비밀녹화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데 뮤지컬은 보호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뮤지컬이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사멸되는 위기에 처해있고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전개가 필요한 상황임. 뮤지컬 밀녹을 대량으로 주고 받은 형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A 위원: 핵심 쟁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실제 댓글 내용을 확인하여 댓글 내용을 간접 증거로 보아 불법복제물 전송이 이뤄졌다고 봤는데 비밀댓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비밀 댓글 개수를 간접증거라고 보고 앞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임.

- K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 C 위원: 게시자가 댓글을 삭제한 것임.
- K 위원: 비밀 댓글도 삭제를 하는 것인지?
- F 위원: 비밀 댓글 작성자가 본인의 댓글을 삭제할 수 있음.
- K 위원: 비밀 댓글의 개수로 판단하게 되면 불법복제물을 주고받은 다음에 비밀댓글을 삭제할 수 있어 우려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주체가 되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심의를 요청할 때 3단계 채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비밀댓글이 삭제되더라도 가결에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는 남아 있음.
- A 위원: K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호원이 채증하기 전에 비밀댓글이 삭제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으로 생각됨. 그런 경우에는 비밀댓글에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남아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비밀댓글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K 위원: 비밀댓글의 내용이 불법복제물을 주고받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 비밀댓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그래서 오늘 논의의 대상으로 하게 된 것임. 이 사안에서 밀착을 교환, 판매한다고 게시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비밀댓글은 불법복제를 전송하고 잘 받았다는 취지의 비밀댓글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연 댓글 내용에 주고받았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음. 그런 점에서 과

연 비밀댓글의 존재 사실만 가지고 불법복제물등의 간접증거로 심의위원회에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K 위원: 비밀댓글이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람이 안했다고 했을 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L 위원: 제가 만약 운영자라고 했을 때 비밀댓글만으로 시정권고 되었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음. 비밀댓글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댓글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비밀댓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있는지?
- A 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J 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면 가능할 것임.
- H 위원: 거래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려면 내용을 봐야함. 판매에 대한 문의만 했을 수 있음.
- L 위원: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반품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0번 이상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음.
- F 위원: 권한이 없는 자가 밀녹을 통해 공연물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게시물 자체가 문제임. 댓글을 기재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보호해줘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임. 현재 공연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E 위원님 말씀처럼 영화는 극장에서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만 공연장에서 횡행하고 있고 공

연업자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밀녹임. 비밀댓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공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 이름과 뮤지컬 제목을 기재하고 교환이나 판매하겠다고 하여 판매정황이 명확함.

- L 위원: 표현의 자유까지 차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 H 위원: 다음 안건에 나오는 밴드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밴드 회원이 2명일 때 불법복제물이 올라갔는데 전송된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송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함.
- A 위원: 밀녹의 비밀댓글과 밴드와는 사안이 구별됨. 밴드는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이 이뤄진 상태고 밀녹 사안은 그렇지 않음.
- J 위원: 밀녹 영상 건당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가격은 확인되지 않음.
- E 위원: 비밀댓글만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가 형사 유죄판결을 내릴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시정조치의 권고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낮은 단계의 증거만 있어도 시정권고할 수 있다고 봄.
낮은 단계의 증거로 시정권고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비밀댓글만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면 앞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하게 비밀댓글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움.

- G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은 아니고 결국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인데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임.

법 규정에 정보라는 것을 넣은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음. 불법복제물 자체도 특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이트 자체가 오로지 불법복제물 교환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정보를 제공했다면 도전적으로 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됨.

실제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해 보임.

E 위원님 말씀대로 비밀댓글의 형태로 불법복제물 전송 방식이 진화하게 된다면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봐서 시정권고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1기 심의위원회에서 정립한 기준은 저작권 침해 정보가 올라가 있고 비밀댓글이 아니라 공개된 댓글이 있고 “판매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등의 댓글이 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았음.

이번에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비밀댓글만 있음. 불법복제물 판매한다는 안내문 고지와 비밀댓글을 결합해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임.

- G 위원: 정확하게 입법취지나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밀댓글로 연락하라고 게시한 것에 대해 막을 필요성이 있음.

- F 위원: 공연제작자한테는 시정권고 가결되어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 이외에는 밀녹 영상이 전송되는 것을 달리 막을 방법이 없음.

- L 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지?

- F 위원: 공중송신권 침해로 형사소송해야 하는데 이미 뮤지컬 공연의 표는 판매하지 못한 상황임.
- L 위원: 뮤지컬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
- F 위원: 저작권법에서 다뤄야 함.
- A 위원: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
- J 위원: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살인했는지 행위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행위를 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증거가 나오지 않음.
- H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
- J 위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질문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
- H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불법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정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J 위원: 시장 규모가 추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합법 시장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알 수 없음. 합법 시장을 추정하기 위해 구매 가격을 질문했던 것임.
- A 위원: 전문위원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밀착을 검색하면 신문기사가 많이 확인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고 있어 공연업계에 경

제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보고하였음. 구글에서 검색할 경우 밀녹 기사가 굉장히 많이 검색되며 2년~3년전부터 공연업계로서는 큰 이슈 중 하나였다고 생각함.

- L 위원: 공연장의 책임도 일부 있는 건 아닌지?
- A 위원: 보안 요원을 많이 공연장에 배치하면 됨.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보안 요원을 배치한다고 해도 한명의 불법복제자를 막기는 어려움이 따름. 전자기기가 발전되어 소규모 촬영기기를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몰래 녹화할 수 있음.
- L 위원: 뮤지컬이나 연극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 회마다 달라 유니크한데 불법으로 촬영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함. 다만 뮤지컬 마니아들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공연장에 가서 봄.
- E 위원: 비밀댓글이 있고 비밀댓글의 개수와 게시물 제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사안인데 이 정도면 가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게시물 제목과 내용이 불법복제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비밀댓글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비밀댓글이 다수 존재하고 게시물의 내용이 불법복제를 공유하거나 판매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E 위원님의 견해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구함.
- C 위원: 판매를 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교환을 한다고 되어 있음.
- A 위원: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판매한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포모'

이라고 기재함.

- K 위원: 판매는 비밀댓글로 해달라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보면 해당 게시물에 비밀댓글이 있으므로 판매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음.
- J 위원: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로 뮤지컬 시장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함. 영화가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하듯이 뮤지컬도 오프라인 공연에서 온라인 공연으로 변화할 것임.
밀착 영상의 화질이 어느 정도의 품질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알 수 없음. 아마추어들이 촬영한 것인지 전문가가 고품질로 촬영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도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금액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한국의 뮤지컬 시장이 전세계 4위임.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촬영해서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거라면 일단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함. 해당 안건은 자유롭게 표결하는 것이 나올 것 같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 안전번호 제2020-37147호~3714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가결: C 위원, L 위원, A 위원, H 위원, F 위원, I 위원, K 위원, E 위원 / 부결: J 위원 / 기권: G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37150호(순번 30번)는 제3분과위

원회(2020. 5. 21. 개최, 제2020-82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오디오 동호회 카페 회원이 자신의 오디오 스피커로 재생되는 대중가요 1곡의 음원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사안임.

- 박성호 위원장: 제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C 위원: 카페 이용자가 오디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음악이 나오는 장면 그대로를 녹화한 영상을 게시함. 한 곡 전체분량이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그 게시 목적이 오디오를 소개하는데 있어 시정권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A 위원: 그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 조치가 권고되면 게시물의 영상부분과 댓글 등 불법복제물이 아닌 영역까지 삭제된다는 문제점도 있어 보임.
- C 위원: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음.
- F 위원: 저는 스피커를 핑계 삼아 음원 한 곡을 전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오디오를 소개할 목적이었다면 게시물 제목에서부터 오디오 모델명만 소개하면 될 것인데, 게시물 제목에 ‘●●●●●● ●●●●●●’ 이런 식으로 저작물 명을 모두 기재하였음. 또한 음질이 좋아 시장대체성이 명확하다고 보임.
- H 위원: 이런 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스피

커 특성을 캐치하기 위함.

- G 위원: 해당 사이트를 이미 알고 있음. 해당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 ♡♡' 게시판에서는 보통 전곡 모두를 올리고 있지 않음. 침해의 의도보다는 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함. 게시물 이용자 또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곡 전부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음. 그러나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든지 해서 '♡♡♡♡ ♡♡'같은 메뉴를 없애는 등 동호회가 질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다른 게시물을 보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일부만을 올리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인기 가요 등은 곡 전체를 올렸음. 전 곡을 올리지 말고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호원에서 주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있었음.
- G 위원: 해당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들도 곡 전체를 다 올려놓았는지?
- C 위원: 같은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을 확인한 것임. 클래식은 일부만을 올리고, 가요는 곡 전체를 올렸음. 음질이 굉장히 좋아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나도 저 오디오가 있으면 음악을 즐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김.
- G 위원: 오디오 음질이 좋아봤자 다시 듣는 것은 컴퓨터 스피커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음. 해당 게시판 게시물 제목들을 보니 자신들이 감상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음.

- K 위원: 해당 카페가 오픈되어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가입한 사람만 게시물을 볼 수 있음.
- A 위원: 회원가입은 자유로운지?
- 성원영 전문위원: 자유로움.
- G 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카페임.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은 있으나 자격을 제한해서 회원가입을 받는 것은 아님. 검색을 하면 회원가입을 안 해도 게시물이 뜨고, 검색해서 뜬 게시물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플레이가 됨.
- K 위원: 불법복제물 공유 의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노래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기 어려운 곡들은 아님. 무료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가능함.
- F 위원: 유튜브에 있는 음원은 권리자에게 수익이 분배되지만 네이버는 아니기 때문에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K 위원: 카페 규모는 어떠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현재 회원 수는 45,480명임.

- E 위원: 오디오 음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 측면에서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심정적으로 공감이 됨. 하지만 만화동호회,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드라마 동호회 또는 한국 소설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 분량을 다 올려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함. 일본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려놨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됨. 비영리성 내지는 동호회 모임이라는 면만 강조를 해서 쉽게 사면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위에 회부한 것임.
- G 위원: 경고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지?
- 정현순 사무처장: 복제·전송자에 대해 경고만 하는 것도 가능함.
- A 위원: 기존 위원회에서 경고만 한 경우도 종종 있었음.
- G 위원: 하드웨어를 통해서 듣는 것을 녹음을 해서 올린 것이라 콘텐츠 자체의 불법복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듦. 게시자나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의식을 못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경고를 한 번 해서 운영자에게 스스로 문제점을 고쳐나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고장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박성호 위원장: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 2020-371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3715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경고가결: C 위원, L 위원, A 위원, F 위원, I 위원, K 위원, G 위원, E 위원 / 부결: H 위원, J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37151호~37187호(순번 31번~67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5. 18. 개최, 제2020-80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전으로,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소규모 밴드(회원 수 100명 이하)에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안임.
- H 위원: 본 안전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함.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임에는 틀림이 없음. 하지만 보호원의 자원(모니터링 인력)이 한정적인데 굳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밴드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는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 E 위원: 사실 밴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1기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기본적으로 밴드가 회원 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 동호인 모임이라는 점, 그리고 복제물의 수도 많지 않았던 점 때문임. 그러나 밴드가 점차 불법복제물이 다량으로 올라오거나 전송, 이용이 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 버렸음. 자동차 카센터 밴드인데 최신 영화가 몇 십편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음. 개방형 밴드여서 회원 가입하는 절차도 어렵지 않음. 그 이후에 밴드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왔음.

문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원에서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밴드의 회원 수가 10명 이하인 등 극히 저조한 회원 수를 갖고 있는 밴드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극히 한정적인 보호원의 모니터링 인력들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임.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회원 수를 가진 밴드에 대해서는 채증을 하지 말자, 모니터링을 하지 말자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회원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되었든 한 개의 불법복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회원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available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임.

과연 일정 규모의 회원 수 이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것을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할지 등을 결정하자는 취지임.

- I 위원: 보호원의 모니터링 업무의 방향성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스러운 입장임. 보호원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일단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불법복제된 영화 게시물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밴드에 올라와 있다면 가결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임.
- A 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분과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음. 당초 시정권고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영상저작물이 주된 대상이었음. 최신 영화들이 디지털 파일화 되어서 업로드 되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이 되어 영화계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함. 그러다보니 회원

수가 많아야 심의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피해가 확산되면 심의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음.

우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계정 정지 세부 기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심의일이 속한 해의 1. 1.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출시 또는 공표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인데,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올라간 밴드들을 보면 예외 없이 2020. 1. 1.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저작물임. 밴드들이 자신의 밴드를 홍보할 목적으로 최신 영상저작물들을 널리 퍼뜨리는 경향이 있어 시정권고 대상에 딱 부합하는 건이라고 판단함.

- C 위원: 저도 시정권고 대상이 해당 커뮤니티 회원 수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임. 또한 시정권고가 꼭 관리자만을 위한 제도인 것이 아니고 이용자를 위한 제도인 측면도 있음. 관리자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개방형 밴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게시물을 미리 삭제하게 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 F 위원: 학생들이 밴드에 있는 불법복제물을 이용해 용돈벌이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G 위원: 형식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외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면 일반 온라인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 H 위원: 모니터링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었고 밴드 내 불법복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견해가 시정권고를 하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밴드에서의 불법복제 게시물과 관련하여 가결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151호~371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37188호(순번 68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4. 20. 개최, 제2020-60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전으로, '☆☆☆☆'가 제공하는 '○○○○○○○○' 커뮤니티 서비스의 특정 카페 게시물(게시글, 댓글) 일체를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가 무단 복제하여 직접 전송한 사안임.
- 박성호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웹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사안임.
- F 위원: 민원인 회사 웹사이트는 체계적으로 마음을 먹고 구성을 한 페이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올린 순서대로 외관이 표현이 된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다른 웹사이트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오용하게 만들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지 데이

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함.

- A 위원: 이 건이 F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 자체를 모방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카페의 게시물과 댓글을 순서대로 긁어와서 결과적으로 외관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음.
- G 위원: 논점이 해당 카페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이냐 중 어떤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두 가지 다임. 데이터베이스인지 판단을 하려면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아서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사이트를 둘러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결론이었음. 이용자들이 막대한 분량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을 누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냈음. 설령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제작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임.
- G 위원: ○○○○○○○○이든지 카페 운영자이든지 누가 권리자인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음. 법리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유저들이 올려놓은 콘텐츠의 모음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 C 위원: 누가 주체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음.
- A 위원: 민원인이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가 되는 권리에 포함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음. 체계적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어야 권리가 인정이 됨.

기존 판례에 입각해서 봤을 때 ○○○○○○○○○ 카페를 데이터베이스로 인정할 수 있을지, 보호할만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임.

- G 위원: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셨는지?

- A 위원: 엔하위키 사건이 이 건에 부합하는 사건이라고 보임. 전문위원이 소개한 판례의 밑줄 친 내용을 보시면 체계적 구성과 관련되어져서 판단할 만한 내용임.

- E 위원: 엔하위키 사건을 보면 놀랍게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상당히 확장 내지는 첫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엔하위키도 게시글을 쓴 주체는 개별 유저들이고 운영자는 메뉴 트리를 구성하고 편집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함. 그에 비춰봤을 때 ○○○○○○○○○ 카페들이 그 정도 수준에 안 미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인 것으로 보임.

- A 위원: 이 건과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 영국 경마협회 사건임. 경마게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다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영국 경마협회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지에 대해서 이때 생성된 데이터의 생산자와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자와 구별을 함.

엔하위키 사건에서도 데이터의 생산은 일반 이용자들이 한 것이지만 운영자가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도 했음. 일부는 수정해서 갱신하기도 했다는 것이 판결에서 사실판단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음. 그런 사실들을 모아서 운영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겠다 판단했던 것임.

금번 심의 건은 기존에 만들어진 편집 틀에 따라 내용이 올라가 있는 것인데 ○○○○○○○○ 사이트 운영자가 별도로 어떤 투자를 했는지 여부가 오늘 판단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음.

- G 위원: 카페 운영자 말고 ○○○○○○○○○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카페 메뉴를 만들고 했을 것인데,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 전체는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 ○은 시스템과 메뉴를 제공하고, ○○○○○○○○○ 시스템을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자가 하는 것임. 그렇다면 이 둘이 공동제작자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음.

- A 위원: 이 카페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에서 이런 카페를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틀 자체를 만들어놓은 것을 포괄해서 보면 양쪽 모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지?

- G 위원: 그러함.

- H 위원: 기술적으로 보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님.

- E 위원: 그럼에도 엔하위키 판결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인정한 것임.
- H 위원: 엔하위키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갖추고 있음.
- G 위원: 엔하위키도 심의대상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게시판 형식이 아닌지?
- H 위원: 엔하위키는 섹션이 있고 예제들이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는 유저들이 게시글을 리스트업하기 위한 틀만 가지고 있는 것임.
- G 위원: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념과는 다름. 사실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는 UCC가 등장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법리가 나왔던 것임. 유저들이 올려놓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운영자들은 업체가 인력 또는 자금을 투자해서 서버와 기틀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해서 유저들로 하여금 콘텐츠를 올려놓게끔 설계한 것임. 그것을 개개의 저작물이 아니라 통째로 가져갔을 때 운영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임.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나 편집저작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저작물을 모아놓은 사람이 투자한 돈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를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함.
- H 위원: 저는 민원인 회사가 만든 시스템이 이미 일반화된 체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특별한 투자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 J 위원: 글을 쓴 사람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A 위원: 그럴 때는 자신이 작성한 글의 어문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음.
- J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확실한 저작권 침해이지 않은지?
- A 위원: 어문저작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옮겨왔다고 하면 성립이 됨.
다만 시정권고는 어떤 핫한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제공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과연 이 건이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건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H 위원: 게시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게시자가 절대적으로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내용임. 예를 들면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게시물 등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하면 게시판 정지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건은 행정기구가 아닌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시정권고 제도는 대심제(對審制)가 아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음. 전문위원이 처음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판례의 법리만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엔하위키 건과 비슷한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엔하위키가 기울인 노력이나 투자와는 다르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음. 전문위원이 확신이 안서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그래서 검토의견을 수정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 쪽에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옳겠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3718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37188호는 부결함(부결: C 위원, L 위원, H 위원, F 위원, I 위원, K 위원, E 위원/ 가결: G 위원/ 기권: A 위원, J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37121호, 37122호~37127호, 37188호는 부결하되, 제2020-37128호~37149호, 37151호~37187호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제2020-3715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 제2호: 분과위원회 구성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보여주며)주요내용에 분과

위원회 구성(안)이 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의 개최 요일과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이의 없음.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함.

(2020년도 3분기 분과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분과위원회 구성(안)대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성호 위원장이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8.

위원장 박성호

위원 김경숙

위원 김연희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이성엽

위원 위정현

위원 윤종수

위원 최승수